제98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기획재정부)	1.석유정제업자, 수출입업자, 판매업자 매점매석 등 금지 (신설) ○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,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반출량 제한 등(안 제4조) – '25.4월 휘발유 등 반출·수입량은 유종별 전년동월 대비 115%(LPG부탄은 120%) 초과 금지 – '25.4월 중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금지 – 예외 사유(천재지변, 수출 물량 급증 등)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반출물량 등 조정 가능 ○ 석유판매업자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판매 기피 제한 등(안 제5조) – '25.4월 중 휘발유, 경유 및 LPG부탄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·보유 금지 – '25.4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금지 ○ 반출·수입물량 보고(안 제7조) –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반출, 수입된 물량에 관한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자료제출 명령 가능 ▶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, 제5조, 제7조	
2	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방역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의 확대(신설) ㅇ 양서류 전염병 3종(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,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, 라나바이러스병)에 감염되었거나,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,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수산생물의 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의 격리·이동제한 등 명령 ▶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▶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▶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▶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2조	1.비중요
3	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(신설) ㅇ「해운법」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일정한 항로와 운항 일정에 따른 정기여객선 항로에서 항로·정박지 지정, 교량 건설 등 해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 ▶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농산물 검사기준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 강화(현미, 밀)(강화) ㅇ (현미) 일반계 품종의 경우 공공비축미곡 등 정부매입 양곡의 현미 품위계측 결과 등을 토대로 현미 품위 검사규격 재설정, 통일계 품종은 현재 거의 재배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내용 삭제 * 현행 현미검사규격은 1979년 10월 이후 개정 안됨 – 용적중, 정립의 최저한도, 피해립, 사미의 최고한도를 최근 공공비축미곡 공시료 현미 계측치를 토대로 현행화 ㅇ (밀)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을 토대로 밀 매입 검사 규격 중 세부 항목 수정, 수분 최고한도 조정 등 밀 품위 검사 규격 재설정 *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용도별 가공적성을 반영한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(2024.2.29., 2024년 밀산업육성 시행계획) – (용적중) 주요 밀 수출국(미국, 호주 등)은 용적중으로 품위를 측정하고 있으며, 국산 밀 수요업체 등 고려 정립을 용적중으로 대체 * 용적중 수치는 2023년산 정부비축 매입 현장 용적중 검사 시범적용(6개 시도, 67개 시료)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함 – (수분) 밀 보관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수분기준 개선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* 수분 함량은 2023년산 정부비축부터 12.5%이하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민간 수요업계에서는 12.0% 이하 기준으로 매입 추진 ▶농산물 검사기준 제2조	
5	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우수사업자 선정기준 추가 및 관련 사실 공개(강화) ○ (법 시행령) 제85조제1항 최근 3년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사업자 선정 제외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) ▶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	1.비중요
6	간이무선국 · 우주국 ·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저궤도위성의 기술기준(신설) ○ 고도 650㎞ 이하 및 11 ㎓~14 ㎓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(이용자 단말)의 기술기준을 마련 ▶간이무선국 · 우주국 ·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▶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▶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여성가족부)	1.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(강화) ㅇ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시수 확대(1시간 추가) 정비 ▶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▶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	1.비중요
8	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개인용혈당검사지의 기재사항 추가(신설) ㅇ 체외진단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“개봉 후 사용기간” 추가 ▶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6조	1.비중요
9	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 · 관리(신설) ㅇ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임상시험 실시를 위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출서류 요건 및 실시기준 등 마련 ▶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 · 관리에 관한 규정 전체	1.비중요
10	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 · 인정제한 기간 강화(강화) ㅇ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 · 인정제한 기간을 3년→5년 강화 ▶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,제6조의3제8조의2	1.비중요